

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- 회부일자 : 20010 4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자동차관리법(제43조의2)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시 대기 환경보전법(제63조)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자동차관리법(제43조의2)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시 대기 환경보전법(제63조)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「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